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2(국·공유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·수익 절차 등)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하게 하는 내용,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·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단(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- ② 국·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이 법 제16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된 국·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국·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·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육시설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303